



KC 60335-2-60

(개정 : 2021-00-00)

IEC Ed 4.0 2017-12

전기용품안전기준

Technical Regulations for Electrical and Telecommunication Products and Component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0부: 전기기포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Part 2-6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hirlpool baths and whirlpool spas

KATS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목 차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1
서문	2
1 적용범위	3
2 인용 표준	3
3 용어와 정의	4
4 일반 요구사항	5
5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	5
6 분 류	5
7 표시 및 사용 설명서	5
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6
9 전동기 구동 기기의 기동	7
10 입력 및 전류	7
11 온도 상승	7
12 공 란	7
13 운전시의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7
14 과도 과전압	7
15 내 습 성	7
16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7
17 번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	8
18 내 구 성	8
19 이상 운전	8
20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8
21 기계적 강도	8
22 구 조	9
23 내부 배선	11
24 부 품	11
25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11
26 외부 전선용 단자	11
27 접지 접속	12
28 나사 및 접속	12
29 공간 거리, 연면 거리 및 고체 절연	12
30 내열성 및 내화성	12
31 내부식성	12
32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	12
부 속 서	13
참고문헌	14
해 설 1	15
해 설 2	16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0242호(2007. 05. 29)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837호(2009. 12. 15)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421호(2014. 9. 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383호(2015. 9. 2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00호(2020.00.00)

부 칙(고시 제2021-0000호, 2021.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5.09.23.)은 1년 후(2022.00.00.)까지 병행 적용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0부: 전기기포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Part 2-6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hirlpool baths and whirlpool spas

이 안전기준은 2017년 12월 제4.0판으로 발행된 IEC 60335-2-6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 – 60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hirlpool baths and whirlpool spas를 기초로 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KS C IEC 60335-2-60(2019.12)을 인용 채택한다.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0부: 전기 기포 발생 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Part2-6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hirlpool baths and whirlpool spas

1 적용범위

제1부의 이 절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이 **안전기준**은 욕내용,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기포발생 욕조 및 **전기 기포발생** 스파로서, 정격 전압이 단상 기기는 250 V 이하, 기타 기기는 480 V 이하인 것의 안전성을 취급한다.

이 **안전기준**은 또한 전통적인 욕조 내에서 공기 또는 물의 순환용 기기에도 적용한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일지라도 대중에게 위험 요소일 수도 있는 기기들, 즉 호텔, 헬스 클럽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 기기들도 이 표준을 따라야 한다.

이 **안전기준**은 기기에 의해 일상적인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다룬다. 그러나 이 표준은 통상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 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
- 기기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

비고 10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탑재용 기기에는 필요하면 추가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 여러 국가에서는 보건 관계 기관, 노동 안전 관계 기관, 수도 관련 기관, 기타 정부 기관에 의하여 요구사항을 별도로 추가 규정하고 있다.

비고 102 이 **안전기준**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수영장 및 운동 연습 풀장에서 물 순환을 위한 장치
- 수영장용 세척 기기
- 의약용 기기
- 부식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기체(먼지, 증기 또는 가스)가 존재하는 곳과 같은, 특수한 상황인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기기

2 인용표준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추가:

KS C IEC 60364-7-701, 저압 전기설비 — 제7-701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건 — 욕조 또는 샤워가 있는 장소

3 용어와 정의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1.9 대체:

정상 동작 (normal operation)

다음 조건에서의 기기 동작

실내용 전기 기포발생 욕조 및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설계에 의해 허용된 최대 수위까지 물로 채워진다.

전통적인 욕조로 사용될 목적의 분리형 기기에 대해 욕조에는 대략 200 mm 깊이 또는 설명서에 규정된 최대 수위 중 보다 불리한 조건을 택하여 물을 채운다.

3.5.1

휴대용 기기 (portable appliance)

추가:

비고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휴대용 기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3.5.101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 (transportable whirlpool spa)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동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분해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

3.5.102

전기 기포발생 욕조 (whirlpool bath)

사용자가 물속에 잠길 수 있게 사용되고, 물 순환과 공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조합하고 있으며, 물을 가열시키는 설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사용 후에 물을 배수하도록 의도된 기기

3.5.103

전기 기포발생 스파 (whirlpool spa)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물속에 잠길 수 있게 사용되며, 물 순환과 공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조합하고 있으며, 물을 가열시키는 설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사용 후에 물을 배수

하도록 의도되지 않는 기기

3.6.4

충전부(live part)

수정:

비고 부품은 8.1.4에 **해당하면 충전부로** 간주된다.

4 일반 요구사항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5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5.7 추가:

물의 온도에 의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이 있다면, 물의 온도는 40℃ 또는 조절기에 의해 허용된 최대 값 중 보다 큰 것으로 택하여 유지한다.

5.101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휴대용 기기로서 시험한다.

6 분류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6.1 수정:

휴대용 기기는 **2종** 또는 **3종**으로 분류하며, 고정형 기기는 **1종**, **2종** 또는 **3종**으로 분류한다.

금속 부품이 물과 접촉하는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1종** 또는 **3종**이어야 한다.

6.2 추가:

전기 기포발생 육조 및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적어도 IPX5**이어야 한다. 다른 기기는 적어도 IPX4이어야 한다. 주택 내이지만 KS C IEC 60364-7-701에 규정된 구역 외부에 장착하도록 의도된 기기의 부품은 적어도 IPX0이어야 한다.

7 표시 및 사용 설명서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7.12 추가:

세척 및 기타 유지 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휴대용 기기의 설명서는 기기의 어떤 부분도 사용하는 동안 욕조 위에 위치해서는 안 됨을 명시해야 한다.

전기 기포발생 스파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물 순도(특히 pH값 및 염소 농도) 유지
- 청소 및 살균
- 커버 사용 및 설치
- 물 폐기
- 결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
- 기기를 장기간 비워 둘 경우의 손상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7.12.1 추가:

설치 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12 V 미만의 안전 초저전압이 인가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충전부를 포함하는 장치의 부분들은 욕조 내의 사람에게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고정된 배선의 접지된 콘센트에만 직접 플러그를 꽂아야 하는 접지를 지닌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된 기기를 고정된 배선에 영구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 원격 조정 장치를 제외하고, 전기적 요소가 부착된 부분들은 욕조로 떨어지지 않게 위치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 기기는 정격 잔여 동작 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RCD, residual current device)**를 통해 인가되어야만 한다.

설치 설명서는 배선 법칙, 즉 부품의 정확한 위치에 설치 및 등전위 결합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기가 나사나 기타 영구 고정 장치에 의해 고정되려면, 설치 설명서는 기기의 고정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101 고정 방법이 명확하면 이 설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전기 기포발생 스파의 설치 설명서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바닥은 예상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 **흘러넘치는 물을 다루기 위해** 적합한 배수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8.1.4 수정: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충전부**로 간주한다.

9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입력 및 전류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1 온도 상승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1.8 추가:

가열 장치가 장착된 기기라면, **전기 기포발생** 육조 또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의 입구에서 수온은 5 0°C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 공란

13 운전 시의 누설 전류 및 절연 내력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4 과도 과전압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5 내습성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5.1 추가:

12 V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 초저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의 절연물 위의 물 흔적은 무시한다.

15.1.2 추가:

측면판이 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전기 기포발생** 육조 및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측면판 없이 시험된다.

16 누설 전류 및 절연 내력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7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추가:

전류가 **보호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최소 전류의 95 %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험은 장착된 염소 살균 셀과 함께 반복된다. 시험은 안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18 내구성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19 이상 운전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9.2 추가:

물이 순환되는 기기에서 기기의 스위치가 **꺼지고**, **전기 기포발생 욕조** 또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가 비워진 후에 **전기 기포발생 욕조** 또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물로 채워지고 기기는 동작된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펌프가 운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 보다 불리한 쪽을 택하여 가열 장치가 켜진다.

공기가 순환되는 기기에서 공기 입출구는 막혀 있다. 가능하면 그 후에 송풍기가 동작하고 가열 장치가 켜진다.

19.7 추가:

시험은 **통상 동작**으로 규정된 것과 같이 **전기 기포발생 욕조** 또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에 물을 채워서 실시한다.

19.13 추가:

물을 가열시키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전기 기포발생 욕조**와 **전기 기포발생 스파** 입구에서의 물의 온도는 11절에 따라 측정했을 때 5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1 기계적 강도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1 추가:

전기 기포발생 스파가 옥내용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면, -10°C 에서 24시간 동안 놓아둔 후 충격 시험을 해야 한다.

만약 기기가 챔버에 비해 너무 크다면, 기기의 부품으로 분리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조립을 하지 않고 충격 시험이 바로 수행된다.

충전부로의 접근을 보호하는 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충격 에너지값 1 J을 적용한다.

22 구조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2.33 추가:

도전성 액체는 12 V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 초저전압**으로 공급되는 **충전부**와 직접 접촉될 수 있다. **비고 101** 이는 8절의 적용에 의해 금지되는 **충전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기포발생 욕조 또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 내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한 스위치 및 조절기와 같은 부품들은 12 V 이하의 **안전 초저전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22.101 공기가 순환되는 기기는 물리 전동기에 침투하여 **충전부** 또는 **기초 절연**에 닿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의 시험에 의하여 판정한다.

전기 기포발생 욕조 및 **전기 기포발생 스파**의 배수관 출구(overflow outlet)를 막고 물이 넘칠 때까지 욕조 또는 스파를 채운다. 비복귀 밸브는 하나씩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전통적인 욕조로 사용될 목적의 분리형 기기는 **휴대용 매트**가 물로 채워진 욕조 내에 놓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루 위에 놓는다. 그리고 나서 매트는 기기의 2 m 이하의 높이로 설계상 허용된 가장 불리한 위치까지 올라간다. 비복귀 밸브는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시험은 모든 가능한 호스 연결 방법으로 시행된다.

시험 후, 29절에서 규정된 값 이하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절연 위에 물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22.102 전기 기포발생 욕조는 욕조가 비워진 후에 남아서 다음에 재순환되는 물의 양이 0.5 L 이하 또는 욕조 용적의 0.2 % 중 보다 적은 쪽으로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기 기포발생 욕조의 용적은 물이 배수관을 통해 흐르기 시작할 때까지 욕조에 채우도록 요구되는 물의 부피라고 간주한다.

적합 여부는 화학적 희석을 이용한 측정, 무게 측정 또는 부피의 측정과 같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판정한다.

22.103 전기 기포발생 욕조 및 전기 기포발생 스파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물에 의해 모발이 틈새로 끼일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의 시험에 의하여 판정한다.

통상 동작 규정대로 기기를 채운다.

400 mm 길이의 중간 또는 가는 자연 모발 50 g을 **지름** 25 mm 나무 막대에 붙인다. 나무 막대는 모발이 흡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발을 욕조의 **물**에 최소한 2 분 정도 담근다.

모발의 끝이 흡입구에 걸쳐서 놓고 기기는 **정격 전압**으로 공급되어 운전한다. 모발이 구멍으로 완전히 빨려들어가도록 2.5분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

물에서 모발을 제거하기 위하여 막대를 잡아 당기는데 그 힘은 다음에 의해 측정된다.

- 막대를 수직으로 당김
 - 막대를 수직에서 약 40° 정도의 각으로 당김
- 그 힘은 20 N 이하이어야 한다.

만일 **전기 기포발생 욕조** 또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에 흡입구용 **분리 가능한 덮개**가 있다면 덮개에 관한 시험을 또한 적절히 시행한다. 시험 동안에 모발은 제거할 의도로 덮개를 청소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시험은 다섯 차례 시행된다.

전기 기포발생 욕조 또는 **전기 기포발생 스파**에 하나 이상의 흡입구가 있다면 교대로 시험한다. 모발이 얽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솔질한다.

22.104 휴대용 기기에는 작은 것들이 침투해서 **충전부**에 접촉할 수도 있는 구멍이 밑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 및 지지면과 구멍 내의 **충전부** 사이의 거리 측정에 의해 판정한다. 이 거리는 적어도 20 mm이어야 한다.

22.105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물 청결의 필수적인 요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물 여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과 시스템에서 물의 pH 값을 자동으로 제어할 필요는 없다.**

적합 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22.106 1종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의 경우에는 물과 접촉하는 모든 금속 부품은 보호 접지에 연결하여야 한다. 물과 접촉하는 금속 부분은 부식에 대해 저항성을 지녀야 한다.

물과 접촉하는 가열 장치의 금속 부품은 3개 층 이상으로 구성된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으로 **충**

KC 60335-2-60:2021

전부와 분리시켜야 한다. 물과 접촉하는 그 밖의 금속 부품은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으로 충전부와 분리시켜야 한다.

적합 여부는 검사 및 관련 시험으로 판정한다.

23 내부 배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4 부품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4.101 19.4에 부합하도록 기기에 장착된 온도 과승 방지 장치는 자동 복귀형 온도 과승 방지 장치가 아니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에 의하여 확인한다.

24.102 3종 기기는 최소한 IPX4로 분류된 안전 절연 변압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에 의하여 판정한다.

25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5.1 수정: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를 제외한 1종 기기는 고정된 배선에 영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설비만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는 플러그가 끼워진 전원 코드만을 갖추어야 한다. 전원 코드의 길이는 최소한 5 m 이상이어야 한다.

25.5 추가: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에 대해 X형 부착은 허용되지 않는다.

25.7 추가:

운반 가능형 전기 기포발생 스파의 전원 코드는 고무 외장 코드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 그 성질은 일반 폴리클로로프렌 외장 코드의 성질 이상이어야 한다(코드 명칭 60245 IEC 57).

26 외부 전선용 단자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7 접지 접속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7.2 추가:

1종 기기는 외부 등전위 결합 도선의 접속을 위한 단자가 제공되어야 한다.

28 나사 및 접속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9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고체 절연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9.2 추가:

절연이 기기의 통상 사용 동안 쉽게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되거나 위치하지 않는 한 미세 환경의 오염도는 3 이다.

30 내열성 및 내화성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0.2.2 적용하지 않는다.

31 내부식성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2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부속서

제1부의 부속서를 적용한다.

참고문헌

제1부의 참고문헌을 적용한다.

해설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한국산업표준과 단일화의 취지

1. 개요

이 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을 최대한 인용하여 단일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다.

2.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의 기준은 2000년부터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안전성 규격을 도입·인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또한 한국산업표준도 2000년부터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규격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중복인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과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3. 단일화 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동일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간단히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전기용품안전기준은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을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변경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단일화 방향을 두 기준 모두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안전기준에서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개정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변경된 기준은 별도의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산업표준의 최신판일 경우는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을 개정기로 하며,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구판은 병행 적용함으로써 그간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판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최신판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그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도 제정요청하고, 아울러 필요시 국제표준에도 제안하여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4. 향후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중복시험 항목을 없애고 단일화 함으로써 표준과 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인증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KS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증기구인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인증에 애로사항을 감소하도록 한다.

해설 2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추가대체항목 해설

이 해설은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을 채택함에 있어 추가대체하는 항목을 적용하는 데 이해를 돕고자 주요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규격의 일부가 아니며, 참고자료 또는 보충자료로만 사용된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 제품에 대비해서 포함된 제품 성능, 부속서 A는 IEC 부합화로 삭제한다.

심 의 : 전기기기 분야 전문위원회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원안작성협력 : 시험 인증기관 담당자 연구포럼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람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및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안전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안전기준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KC 60335-2-60 : 20xx-xx-xx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Part 2-6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hirlpool baths and whirlpool spas**

ICS 29.060.20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http://www.kats.go.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주소 :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TEL : 043-870-5441~9 <http://www.kats.go.kr>

